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가단1009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3. 11.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290,8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90,801원 및 그 중 1,573,79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0. 9. 15. E에게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43.8%, 변제기 2012. 12. 17.로 하여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F는 2012. 12. 31.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 10.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G는 2017. 9.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G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10. 10. E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21. E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61035 양수금 사건에서 “E은 원고에게 8,745,960원 및 그 중 1,573,799원에 대하여 202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1. 12. 30. 확정되었다.

라. E의 아버지 H은 2023. 5. 18. 사망하였고, E의 어머니 I, E, J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상속분은 I 3/9, E 2/9, J 2/9, 피고 2/9이다).

마. E은 2023. 11. 3. I, J, 피고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2023.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그 가액은 76,222,222원(= 이 사건 부동산의 2023.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343,000,000원 × 상속분 2/9, 원 미만 버림)이다]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E은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출금채무, L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6. 21.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10,602,413원[= 8,745,960원 + 1,573,799원×0.438×(2년+25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M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상사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E은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매월 15일에 27회에 걸쳐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고, 만약 E이 대출이자의 납입을 2개월간 지체하면 E은 F의 통지가 E에게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한 사실, E이 2011. 5. 17. F에게 원리금 120,000원을 지급한 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F가 2011년경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그 독촉사건이 2011. 11. 10. 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99935 대여금 사건)에 회부된 사실, 위 사건의 소장 부분이 늦어도 2012. 4. 18. 전에 E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E이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이다)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한 후인 2024.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 4. 18. 2011가소2499935 대여금 사건에서 ‘E은 F에게 대여원금 1,573,799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선행판결이 2012. 5. 24.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21. 10. 1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1. 12. 30.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인인 F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변경되어 선행판결 확정일인 2012. 5. 24.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나, 위 대여금채권을 전전양수한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 주식회사가 사해행위 후인 2023.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6,222,222원과,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보전채권액인 10,602,413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 8. 당시 피보전채권액인 10,290,801원(소가계산서 참조) 중 적은 금액인 10,290,801원이 된다.

다. 소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3. 11. 3. 체결된 부분을 10,290,8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0,290,801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1,573,79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구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O에 있는 P아파트 Q동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R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5층 아파트

1층 484.81㎡

2층 내지 15층 각 475.47㎡

지하층 427.4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O 대 65,06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S호 철근콘크리트조 49.7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5,069.7분의 32.65 - 끝 -

